의안번호	2207586
의 뢰 인	민형배 의원
회 답 일	2025. 2. 17.
추계번호	25C0329

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Ⅰ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조(교육의 기회 균등 등)	국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학교급별 학교당 학생 수의 상한을 정함	의무규정

Ⅱ. 미첨부 근거규정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4조(교육의 기회 균등 등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❑ 개정안에 따라 국가가 정할 학교급별 학교당 학생 수 상한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○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국가가 정하는 상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·공립 학교를 신설하거나 학급을 신축·증축할 수 있고, 이 경우 지방교육재정 지출이 증가할 수 있음[1)]

❑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국가가 정할 학교급별 학교당 학생 수 상한을 알 수 없고, 해당 상한을 충족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이 선택할 정책수단도 알 수 없어, 추가재정소요 발생 여부 및 그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

1)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 제3조제4항에 따른 증액 교부금이 교부될 경우 국가의 추가재정이 소요될 가능성도 있음

○ 유치원은「유아교육법 시행령」제16조[2]에 따라, 초·중·고등학교는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51조[3]에 따라 시·도교육청이 지역의 상황에 맞게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결정하여 학교급별·학년도별 편성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, 국가가 개정안에 따라 결정할 학교급별 학교당 학생 수 상한을 추정하기 어려움

* [참고자료] 시·도교육청별 학생배치기준

○ 또한, 국가가 정하는 상한을 초과하는 지역이 발생하는 경우, 해당 지역이 국가가 마련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어떤 정책수단을 사용할지 현 시점에서 예측하기 어려움

- 기준을 초과한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①해당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를 신설하는 방안, ②기존 학교 내 학급을 신축·증축하는 방안, ③기존 특별교실 등을 전환하여 일반학급을 확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음
- 이 중 학교를 신설하는 경우 학교용지 매입 및 건물 신축 비용, 학급을 신·증축하거나 특별교실을 전환하는 경우 시설비 및 내부비품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, 각각의 경우에 추계 대상과 소요액이 상이함
- 이에 개정안에 따른 소요 비용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방향을 바탕으로 사업량(학교수, 학급수, 통학 지원 대상 학생수 등)과 단가(학교 신설, 학급 확충, 통학 지원 단가 등)를 적절히 가정하여야 하나, 현시점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 예측이 어려워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

❑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---

2)「유아교육법 시행령」
제16조(학급 수 및 학급당 유아 수) 유치원의 학급 수와 학급당 최소 및 최대 유아 수는 유치원의 유형,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할청이 정한다.

3)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
제51조(학급수・학생수) 학교의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감이 정한다.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. (이하 생략)

Ⅲ. 부대의견

❑ 없음

Ⅳ. 작성자

❑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김우림	이진우

❑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정혜승	02-6788-3738	wrkim@nabo.go.kr

[참고자료1] 적정 학생 수 기준(시·도교육청별)

시도	적정 학생 수
서울	○ 적정 학생 수 별도기준 없음 ※ 학생배치기준 - 초 25명, 중 26명, 고 26명
부산	○ 적정 학생 수 별도기준 없음 ※ 학생배치기준 - 초(25명), 중(27명), 고(일반고 23명/특성화 21명)
대구	○ 적정 학생 수 별도기준 없음 ※ 2024학년도 학급편성 기준 - 초, 중: 27명 이하 - 고: 25.2명 이하(추첨배정고 기준)
인천	○ 적정 학생 수 별도기준 없음 ※ 학급편성 기준 - 초 27명 - 중 28명, 고 28명 1. 초등학교 학급편성 기준 - 일반학교(27명), 결대로자람학교(25명), 소규모학교(20명) 다문화밀집학교(20명), 교육균형발전학교(25명)_1,2학년 대상 2. 중학교 학급편성 기준 - 신입생 배치지표: 28명 (단, 결대로자람학교: 25명, 다문화밀집교: 20명) 3. 고등학교 학급편성 기준 - 일반고: 28명(단, 결대로자람학교: 25명)
광주	○ 적정 학생 수 별도기준 없음 ※ 2024년 학생배치기준 - 초 1~2학년 20.4명, 초 3~6학년 24.7명 - 중 25명, 고 26명
대전	초 23명, 중 25명, 고 23명
울산	○ 적정 학생 수 별도기준 없음 ※ 2024년 학생배치기준으로 작성 - 초 1학년 20명, 초 2~6학년 27명, - 중 27명, 고 24명
세종	초 1~2학년 20명, 3~6학년 25명 / 중·고 25명 ※ '24년~'25년 교원 정원 감소로 인해 중등의 경우 급당 27명~28명 배치
경기	○ 적정 학생 수 별도기준 없음 ※ 2024년 학생배치기준으로 작성 - 초 26~30명 - 중 27~36명 - 일반고 25~35명, 특성화고 22~27명

<table>
<tr><th>시도</th><th>적정 학생 수</th></tr>
<tr><td>강원</td><td>초 23~24명
중 28명
고 (일) 22~28명, (특) 16~24명</td></tr>
<tr><td>충북</td><td>○ 적정 학생수 기준 없음
※ 2024.10. 배치계획에 의거 학급당 학생수를 아래와 같이 운영
– (초) 동지역 26명, 읍·면지역 25명
– (중) 동지역 28명, 읍·면이하 25명
– (고) 일반고 20~29명, 특성화고 16~20명</td></tr>
<tr><td>충남</td><td>○ 적정 학생수 기준 없음
※ 학급편성 배치지표(2024년)
<table>
<tr><th rowspan="2">급별</th><th colspan="4">일반학급 (단위: 명)</th></tr>
<tr><th>신입생</th><th>동지역</th><th>읍지역</th><th>면지역</th></tr>
<tr><td>초</td><td>22</td><td>28</td><td>27</td><td>26</td></tr>
<tr><td>중</td><td>–</td><td>28</td><td>28</td><td>28</td></tr>
<tr><td>고</td><td colspan="4">· 일반고: 20명~34명
· 특성화고, 특목고 등: 16~28명
(계열에 따라 적정규모 정원으로 별도 추진)</td></tr>
</table></td></tr>
<tr><td>전북</td><td>○ 적정 학생수 기준 없음
※ 2024학년도 학급편성 기준
– (초) 20~27명(단, 일부 개발지구 28명)
– (중) 27, 25, 24명(동, 읍, 면 기준)
– (고) 20~27명(일반고 기준)</td></tr>
<tr><td>전남</td><td>○ 적정 학생수 기준 없음
※ 현재 학급편성 기준
– 초등학교
·시지역 28명(1~5학년 25명)
·읍지역 27명(1~3학년 20명, 4~5학년 25명)
·면지역 24명(1~5학년 20명)
– 중학교: 시지역(29명), 읍·면지역(28명)
– 고등학교: 일반고(18명~28명), 특목고(18명~30명), 특성화고(18명~22명)</td></tr>
<tr><td>경북</td><td>○ 적정 학생수 기준 없음
※ 2024학년도 학급편성 기준
– 초(1학년): 동 27명, 읍·면 24명
– 초(2~6학년): 동 28명, 읍·면 24명
– 중: 동 26명, 읍·면 24명
– 고: 21~25명(일반고,특성화고)</td></tr>
</table>

<table>
<tr><th>시도</th><th>적정 학생 수</th></tr>
<tr><td>경남</td><td>○ 적정 학생수 기준 없음
※ 2024학년도 학생배치 기준
– 초: 1학년 23명, 초 2~6학년 26명
– 중 : 시(동, 읍)–28명 / 시(면), 군–25명
– 고: 2024년 고등학교 학생 배치기준
<table>
<tr><th rowspan="2">구분</th><th colspan="2">1학년</th><th colspan="2">2학년</th><th colspan="2">3학년</th></tr>
<tr><th>시</th><th>군</th><th>시</th><th>군</th><th>시</th><th>군</th></tr>
<tr><td>일반고</td><td>22~31</td><td>22~25</td><td>23~33</td><td>22~26</td><td>22~33</td><td>22~23</td></tr>
<tr><td>특성화고</td><td>20</td><td>20</td><td>20</td><td>20</td><td>20</td><td>20</td></tr>
</table></td></tr>
<tr><td>제주</td><td>○ 적정 학생수 기준 없음
※ 학생 수 변동 추이, 교원정원, 시설여건 등을 검토하여 학급당 배치기준 결정
<2024학년도 학생배치기준>
– 초등학교
<table>
<tr><th>동(洞)
지역</th><th>읍면
(원도심학교)</th><th>제주형자율학교</th><th>비고</th></tr>
<tr><td>29</td><td>27</td><td>27</td><td>1~2학년 27명</td></tr>
</table>
– 중학교
<table>
<tr><th colspan="2">동(洞)지역</th><th rowspan="2">읍면지역</th><th rowspan="2">제주형자율학교</th></tr>
<tr><th>제주시 서부</th><th>그외</th></tr>
<tr><td>30</td><td>29</td><td>26</td><td>25(제주시동 27)</td></tr>
</table>
– 고등학교
<table>
<tr><th colspan="4">일반고</th><th colspan="3">특성화고</th></tr>
<tr><th rowspan="2">평준화</th><th colspan="2">비평준화고</th><th rowspan="2">표선고
(IB)</th><th rowspan="2">동(洞)</th><th rowspan="2">읍면</th><th rowspan="2">한국뷰티고
서귀산과고</th></tr>
<tr><th>동(洞)</th><th>읍면</th></tr>
<tr><td>30</td><td>28</td><td>28</td><td>25</td><td>25</td><td>24</td><td>23</td></tr>
</table></td></tr>
</table>

자료: 2024.10.기준 시·도교육청 자료를 교육부 취합제출